

사단법인 드림미디어 정관

2011. 07. 04. 제정
2011. 08. 17. 개정
2013. 01. 30. 개정
2015. 12. 16. 개정
2017. 02. 23. 개정
2018. 04. 23. 개정
2021. 11. 24. 개정
2023. 03. 13.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드림미디어”(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는 사무소를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 언론운동을 발전시키며 주류에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혁에 기여하고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 저널리즘 지원 및 참여 활동
2. 일간신문 광주드림 후원사업
3.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4. 시민기자학교 개최
5. 연구 조사, 학술 사업 및 교육 사업
6. 위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출판·홍보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 ① 본회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가입과 자격)

- ① 본회 정회원의 자격은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후원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타 회원의 활동 및 상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자로 하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위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자격의 상실)

1. 본인의 탈회 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

- ① 회원으로써 본 단체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 단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제명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 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⑤ 임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주요 간부가 되었을 때는 본회의 임원에서 제척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8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본 회 산하 사업단위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제19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1조(고문·자문위원) 이사회는 본 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를 고문·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 18조 4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④ 총회에서 임원 전원을 개선할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의장을 지명하여 총회를 주재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② 본 회의 해산
-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 ⑦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사전에 결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6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제 18조 4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
- ② 사업계획 운영
- ③ 예산 결산서 작성
-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재산관리
- ⑥ 본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⑦ 각종 사업담당 위원회의 설치
-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⑨ 연대단체의 참여 및 탈퇴
- ⑩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⑪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

- ①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세입충당) 본 회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단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4조(수입금)

- ①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 (출자 및 용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제38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활동비)

-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업운영을 맡은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회 사업의 집행을 맡은 회원과 사무부처 및 사업단위 활동성원의 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장 사업단위

제40조(광주드림 후원)

① 본회는 일간신문 광주드림의 지속 가능한 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및 행사를 기획, 실행한다.

② 본회는 시민저널리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 사업으로 시민기자학교를 운영한다.

3항~ 5항 삭제

제41조(위원회) 이사회는 이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3조(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44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함께,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③ 당해 연도 말의 재산목록,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제48조(규칙 등) 본회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이사회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